

예 산 총 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44,402,104	16,332,063
일반회계	457,563,404	13,726,902
특별회계	86,838,700	2,605,161
공기업특별회계	65,824,946	1,974,748
공영개발특별회계	19,487,191	584,61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717,541	591,52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620,214	798,606
기타특별회계	21,013,754	630,413
의료급여특별회계	300,697	9,021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46,074	4,382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95,883	8,876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3,342,767	100,283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430,258	42,908
수질개선특별회계	11,212,648	336,37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1,000	3,03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17,546	9,526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	3,866,881	116,00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이월사업비는 별첨과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859,96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2,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재원구분) 의존재원에 대한 약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국고보조금(국), 지역발전특별회계(지), 기금(기), 도비보조금(도), 특별교부세사업(특), 시군조정교부금등(조)